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를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5항 및 제7항).
-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II.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제9조제2항에 대해 입법 내용이 불명확하여 적용이 어렵고, 보험원칙 위배 및 보험상품 운영 불가,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의 우려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는, ① 개정안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 또는 권역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 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할증’은 개별 가입자별로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i) 행정구역 또는 권역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ii) 개별 가입자별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금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②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사고 발생 확률)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¹⁾에 위배되며, ③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산정되는 보험임에도 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산정·조정)을 금지하고 있어 상품으로 운영 불가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피해경감 노력을 확인해서 할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④ 시·군 내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점²⁾, 그 밖에 ⑤ 고손해율 농가로 인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재해위험도가 낮은 지역·농가가 보험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점 등을 수용 불가의 근거로 들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재해위험도에 비례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타 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그 밖에 조문 이동에 따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1)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 사고 발생의 확률의 곱과 같아야 함(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2) 보험료 할증을 금지할 경우, 재해위험도, 보상 실적 등과 상관 없이 모든 농가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되는 문제 발생
* '할인·할증'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시·군) 단위로 산출되는 기본요율을 가입자별로 재해위험도(누적손해율)에 따라 개인화하는 요소(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조).

(전문위원 김 성 완)